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2.
제출자 : 충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충주시의 비전과 혁신적 창의 행정 구현 및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한 부서 신설
- 부서나 담당업무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거나 미래 지향적인 명칭으로 변경

2. 주요내용

가. 부서 신설, 명칭 변경

- 신설 : 창조정책담당관, 조정경기장관리소
- 명칭변경
 - 주민지원과 ⇒ 복지정책과
 - 사회복지과 ⇒ 노인장애인과
 - 생활환경과 ⇒ 자원순환과
 - 하수처리과 ⇒ 하수자원화과

나. 분담업무의 조정

- 혁신 분권, 시 조직 : 안전행정국 ⇒ 창조정책담당관
- 자원봉사 : 문화복지국 ⇒ 안전행정국
- 조정경기장관리 : 문화복지국 ⇒ 조정경기장관리소

다. 법령 개정에 따른 직책 변경

- 보건진료원 ⇒ 보건진료소장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 없음
- 라. 그 밖의 사항
 - (1) 입법예고 결과 : 제출된 의견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완료
 - (3) 부패영향평가 : 완료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제외대상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홍보담당관”을 “홍보담당관, 창조정책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혁신 분권, 시 조직, 예산”을 “예산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자원봉사센터 지도·감독, 자원봉사 업무

제7조제1항 중 “주민지원과, 사회복지과”를 “복지정책과, 노인장애인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업무, 자원봉사업무”를 “업무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보건진료원”을 각각 “보건진료소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보건진료원”을 “보건진료소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6호바목 중 “기타 부대시설의”를 “그 밖의 부대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조정경기장관리소

가. 조정경기장 시설물 유지·보수와 안전 관리

나. 조정경기장 관리·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
별표 1(보건소·보건지소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) 중 오석보건진료소 란의 ”금가면 김생로 754”을 “금가면 김생로 750”으로, 대전보건진료소 란의 “동량면 내동1길 12”를 “동량면 내동1길 19”로, 개천안보건진료소 란의 “동량면 호반로 371-14”을 “동량면 호반로 371-10”로 각각 한다.

별표 2(사업소의 명칭·위치) 중 충주시박물관 란 밑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· 충주시조정경기장관리소

· 충주시 중앙탑길 150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

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중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노인장애인과장”으로 한다.

②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와 제11조제4항제2호 중 “생활환경과장”을 “자원순환과장”으로 각각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·보좌기관) 부시장 밑에 <u>홍보 담당관</u>을 둔다.</p>	<p>제4조(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·보좌기관) ----- <u>홍보 담당관, 창조정책담당관</u>---</p>
<p>제5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 ① (생 략)</p> <p>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.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<u>혁신 분권, 시 조직, 예산, 통계, 대외 협력 및 의회 관련 업무</u>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8. ~ 18. (생 략)</p>	<p>제5조(안전행정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예산</u>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자원봉사센터 지도·감독, 자원봉사 업무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9. ~ 19. (현행 제8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)</p>
<p>제7조(문화복지국에 두는 과) ① 문화복지국에 <u>주민지원과, 사회복지과, 여성청소년과, 문화예술과, 체육진흥과, 관광과</u>를 둔다.</p> <p>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체육 진흥,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, <u>자원봉사업무</u></p> <p>3. ~ 6. (생 략)</p>	<p>제7조(문화복지국에 두는 과) ① ----- <u>복지정책과, 노인장애인과</u>-----.</p> <p>②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업무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소장 등) ① 보건소 및 보건 지소에 각각 소장·지소장을 두고, 보건진료소에 <u>보건진료원</u> 을 둔다.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, 보건지소 장과 <u>보건진료원</u> 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	제10조(소장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보건진료소장</u> -----. ② ----- --- <u>보건진료소장</u> ----- ----- -----.
제11조(소관사무) ① (생 략) ② <u>보건진료원</u> 은 관할구역에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	제11조(소관사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보건진료소장</u> ----- ----- -----.
제17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6. 공공시설관리소 가. ~ 마. (생 략) 바. 소관 시설의 조경 관리 및 <u>기타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</u> 사. (생 략) 7. ~ 10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7조(소관사무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----- <u>그 밖의 부대시설</u> ----- 사. (현행과 같음) 7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11. 조정경기장관리소</u> <u>가. 조정경기장 시설물 유지</u> <u>· 보수와 안전 관리</u> <u>나. 조정경기장 관리·운영</u> <u>전반에 관한 사항</u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 [일부개정 2011. 7. 14 법률 제10827호]

- 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3.3.23] [대통령령 제24425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- 제6조(기구설치의 일반요건)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·조사·분석·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(국장은 제외한다)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,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.
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[시·도는 5급 4명 이상, 시·군·자치구(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는 6급 4명 이상 포함]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.
1. 국의 소관 업무(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·군·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)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 할 필요가 있을 것
 2.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
-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은 그 행정사무

를 총괄하는 부단체장(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,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)의 지휘·감독 하에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·보좌기관인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실·국 및 과·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·국은 본부·단·부로, 과·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·국 또는 과·담당관으로 본다.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6.29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20조(사업소와 출장소 등)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.

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,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는 상수도·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·지구·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·

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7.3>

⑤ 사업본부·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(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과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·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7.30, 2012.4.10>

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

[시행 2013.1.23] [법률 제 11514호, 2012.10.22 일부개정]

제15조(보건진료소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[도농복합형태(都農複合形態)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, 읍·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]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시·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·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.

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,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10.22]